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수도권 지역 불공정행위 사건과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으로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0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2명, 7급 15명, 8급 4명, 9급 4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45명(6급 22명, 7급 15명, 8급 4명, 9급 4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12. ~ 12.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그 밖의 사무소장은”을 “경인사무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그 밖의 사무소장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후단 중 “5명”을 “6명”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평가대상 조직”을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평가대상 조직)”을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을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조직”을 “조직 및 정원”으로 한다.

별표 1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란 다음에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기도
-------------	-----

별표 2 중 총계 “483”을 “484”로 하고, 일반직 계 “480”을 “48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60”을 “461”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64”를 “214”로 하고, 일반직 계 “164”를 “214”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 다음에 “3급 또는 4급 이하 213”을 신설하고, “4급 이하

163”을 삭제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25조제1항 관련)

1.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조사관리관	1명

2.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불공정행위 사건 조사 및 민원 처리 업무 수행	45명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소장) ① 사무소에 소장 1 명을 두되, 서울사무소장은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으로, <u>그 밖의 사무소장은</u> 4급으로 보한다.	제20조(소장) ① ----- ----- ----- ----- <u>경인사무소장은 3급</u> <u>또는 4급으로, 그 밖의 사무소</u> <u>장은</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2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 ·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 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 다)은 <u>5명</u> 을, 3급 또는 4급 공무 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 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 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 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② ----- ----- -----. ----- ----- ----- <u>6명</u> ----- ----- ----- ----- ----- ----- -----.

제5장 <u>평가대상 조직</u>	제5장 <u>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u>
제25조(<u>평가대상 조직</u>)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u>위원회</u>에 두는 <u>평가대상 조직</u>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u>평가대상 조직</u>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5조(<u>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u>) ① ----- <u>위원회</u>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u>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u>-----. ② ----- <u>조직 및 정원</u>-----.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83</u>	<u>484</u>	+1
·	·	·	
·	·	·	
일반직 계	<u>480</u>	<u>481</u>	+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460</u>	<u>461</u>	+1
·	·	·	

[별표 3]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64</u>	<u>214</u>	+50
일반직 계	<u>164</u>	<u>214</u>	+50
고위공무원단	1		
3급 또는 4급 이하	<u><신 설></u>	<u>213</u>	+213
4급 이하	<u>163</u>	<u><삭 제></u>	-163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57